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87
----------	-------

제출년월일 : 2021.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2021년부터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전면 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안부 훈령)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 정비하여 현실성 있는 장학금 지급으로 사회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지도자의 “중·고등학교 자녀”에서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로 변경(안 제1조)

나. “새마을운동에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서 “새마을사업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내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안 제3조)

다. 장학생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안 제5조)

라. 장학금 지급액은 “공납금 전액”에서 “학기별 최대 90만원까지”로 변경(안 제7조)

마. 장학기금 확보 규정 삭제(안 제11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초·중등 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 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1. 5. 27. ~ 6. 16.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5) 제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1.08.24.)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 장학금, 우등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새마을사업에 2년 이상 봉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이내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지도자(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단,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를 “**우등장학생 :**”으로,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을 “**직전학기 학업성적**”으로,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50퍼센트 이내인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를

“특기장학생 :”로, “**뛰어난 자**”를 “뛰어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공장학생 :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어 새마을 관련 표창을 받은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이거나 새마을사업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전·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금 지급대상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의 제목 “(**선정**)”을 “(**장학생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지회장은 공정한 장학생 선정을 위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② 위원회는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장학생을 선정한다.
- ③ 위원회는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장학생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중 “**구 새마을지도자수의 7%**”를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장학금**)”을 “(**장학금 지급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선정된 그 해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 최대 9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조례에

다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80/100이하”를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생은 학교생활에 충실하여야 하며,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장학금의 종류) <u>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u>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u>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u>	<u>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장학금의 종류) <u>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우등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u>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u>장학금 지급대상은 새마을사업에 2년 이상 봉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이내인 서울특별시 마포</u>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이상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어 새마을 관련 표창을 받은 현직 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또는 반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

금 새마을지도자(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단,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유공장학생 :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어 새마을 관련 표창을 받은 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이거나 새마을 사업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장학생 : -----
----- 직전학기 학업 성적-----
----- 50퍼센트 이내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특기장학생 : -----

----- 뛰어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금 지급대상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

금을 지급받는자는 제외한다.

제5조(선정)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구청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유공지도자

<신 설>

<신 설>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정) ① 구지회장은 공정한 장학생 선정을 위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장학생을 선정한다.

③ 위원회는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장학생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구 새마을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
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
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
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
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삭 제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
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생수
의 80/100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 5. (생 략)

② 구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

제6조(장학생의 정원) -----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
----- 범위-----.

제7조(장학금 지급액) ① 장학생
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선정된
그 해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학기별 최대 90만원까지 지
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구지회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
----- 80퍼
센트 이하-----

4. · 5.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u>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u> 제10조(장학생의 의무) <u>장학생은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u> 제11조(장학기금 확보) <u>장학금 지급업무를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확보는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u>환수할 수 있다.</u> 제10조(장학생의 의무) <u>장학생은 학교생활에 충실하여야 하며,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u> <u><삭 제></u>
--	---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7조(장학금 지급액) 제①항

: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된 그 해에 한하여 학기별 최대 9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권동희 (☎ 3153-8322)